

계약대상자 확인서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용)

본인확인	담당	책임자

항목	확인내용																				
가입자격	본인은 계약 체결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금융종합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며,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또는 농어민에 해당합니다. (외국인인 경우) 본인은 거주자임을 확인합니다.																				
가입유형 관련 확인사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 유형별 기준 및 세제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일반형</th> <th>서민형</th> <th>청년형 등</th> </tr> </thead> <tbody> <tr> <td>가입대상</td> <td>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농어민</td> <td>총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 사업자</td> <td>청년(만15세~29세) 자산형성지원금수령자</td> </tr> <tr> <td>비과세 한도</td> <td>2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계약기간</td> <td>5년</td> <td>5년</td> <td>5년</td> </tr> <tr> <td>의무가입기간</td> <td>5년</td> <td>3년</td> <td>3년</td> </tr> </tbody> </table>	구분	일반형	서민형	청년형 등	가입대상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농어민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 사업자	청년(만15세~29세) 자산형성지원금수령자	비과세 한도	200만원	250만원	200만원	계약기간	5년	5년	5년	의무가입기간	5년	3년	3년
	구분	일반형	서민형	청년형 등																	
	가입대상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농어민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 사업자	청년(만15세~29세) 자산형성지원금수령자																	
	비과세 한도	200만원	250만원	200만원																	
계약기간	5년	5년	5년																		
의무가입기간	5년	3년	3년																		
※ 가입 유형별 비과세 한도 초과이익은 분리과세 됩니다.																					
가입연도 신규취업 또는 창업자 가입요건으로 계약 체결한 경우 일반형으로만 가능하며 가입 이후 서민형 가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변경이 불가합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의 경우에는 연간 2천만원에서 해당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연간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함)으로 총 1억까지, 고객님께서 정한 연간납입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추가 입금이 가능합니다.																					
자격검증 관련 확인사항	신규 시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은행에 등재된 최종 자택주소 또는 핸드폰으로 통보되며, 본인은 향후 은행에 등재된 자택주소와 연락처가 상이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주소 및 연락처가 변동되는 경우 사전에 은행에 신고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가입 고객의 직전연도 금융종합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및 국세청에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경우 계약해지 및 감면세액 추정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국세청에서 부적격자로 확인되어 통보를 받은 경우 국세청 부적격자 확인 통보일로부터 2개월(가입자가 사망, 해외 장기 출장,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반드시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알려야 함을 확인합니다.																				
해지 및 계약 만기 확인사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일부 해지가 불가함을 확인합니다.																				
	의무가입기간 만료 전에 특별 해지 사유가 아닌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며,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 추정 등 불이익이 발생함을 확인합니다.																				
	아래의 특별 해지 사유에 의해 의무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⑥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신청하는 경우에만 세제혜택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천재지변 ③ 가입자의 퇴직 ④ 사업장의 폐업 ⑤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⑥ 은행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계약 만기시점에는 매도지시가 없더라도 보유자산 모두 매도 후 해지대금 연결계좌로 입금 처리되며, 계약 만기와 운용 자산 만기불일치로 인한 운용자산별 매도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계약 만기시점 또는 특별해지 시점에 보유자산 모두를 환매 또는 매도하지 않는 경우 전체 가입기간에 대하여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금액/한도/중복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타행 금융정보 조회를 의뢰/동의합니다.

년 월 일

고객명:

인/서명

대리인:

인/서명



